

보 건 복 지 동 향

보건복지부 2014년 10월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 ■ 잘못 낸 연금보험료, 회사 문 닫으면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준다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직접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기여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앞으로는 회사가 문 닫더라도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의결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 문 닫은 경우, 잘못 낸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낸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공포 6개월 후 시행) *비정상적 정상화 과제

○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고 있으며 잘못 낸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하되, 사용자가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

- 이에 따라, 사업장이 문 닫은 경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잘못 낸 보험료가 있더라도 돌려주기 어려웠다.

○ 앞으로는 회사가 문을 닫는 등으로 사용자에게 잘못 낸 보험료를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게 된다.

②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 단일화(공포 6개월 후 시행)

* 반환일시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적상실·국외이주, 사망 시에는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료를 낸 날의 다음 달부터 반환일시금을 받는 달까지의 기간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 지금까지는 보험료를 낸 이후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다면, 자격 상실 전까지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상실 이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였다.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2.4%,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2.2%('14)

-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격 상실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어, 반환일시금 급여가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반환일시금 이자율 변경 〉

적용이자율	현행	개정안
보험료 낸 날 ~ 자격 상실일	3년 만기	3년 만기
자격 상실일 ~ 반환일시금 사유 발생일	1년 만기	

◆ '10.3.5. 국외 이주한 한 A씨

- (지역 가입자 자격 취득기간) '00.1.1. ~ '07.8.30. (월 10만원 × 5회 납입 가정)
- (자격 상실 ~ 지급사유 발생일) '07.8.30. ~ '10.3.5.

☞ 반환일시금 총액

- (개정전) 725,100원 (개정후) 729,600원 (4,500원 증)

③ 농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대상 확대(공포 후 시행)

○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고(월 별 납부 원칙),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기준소득 85만원 이하: 보험료 1/2 지원, 85만원 초과: 월 38,250원 정액 지원

- 이러한 혜택을 누리려면 지금까지는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본인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한 증명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다만, 농지원부로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축산업 등록을 하거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등은 별도의 확인을 생략하고 있다.

○ 앞으로는 농어업 정보시스템에 경영정보가 등록된 사람도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어업인이 보다 쉽게 연금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반환일시금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빠르면 다음 주 중 공포될 예정이다.

2013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요 약〉

① 2013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실시 개요

- (수요) 총 4,038가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자 30% 포함)
- (공급) 총 3,395개 사업체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체 및 제공기관)

② 수요조사 결과

- 조사대상 사회서비스 중 성인(노인·장애인 등)돌봄 및 아동보육서비스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문화·보건의료서비스 다음으로 이용희망을 또한 높은 수준

③ 공급조사 결과

- 과반수가 개인사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 관련 사업체의 진입 활발, 고용계수(23,07명) 등이 관련 산업평균(13,57명) 보다 높음
- * 취업계수, 고용유발계수도 23,24명, 27,42명으로 관련 산업 평균(15,49명, 16,13명)보다 높음

④ 사회서비스 관련 의견

- 사회서비스 이용으로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평가와 함께 서비스 확충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
- * 응답자의 90%가 사회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이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응답, 80%가 서비스 이용으로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평가
- * 응답자의 65% 이상이 국가적 차원의 서비스 제공 필요성에 공감하며, 67.2%가 추가적인 세금 부담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
- * 응답자의 70% 이상이 국가와 이용자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답변, 91.9%가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수요현황 및 공급기관 실태를 파악하고자 2013년 실시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는 사회서비스 정책방향 수립 및 활성화방안 마련 등 사회서비스 정책추진을 위한 통계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09년 이후 2년주기로 실시

○ 「2013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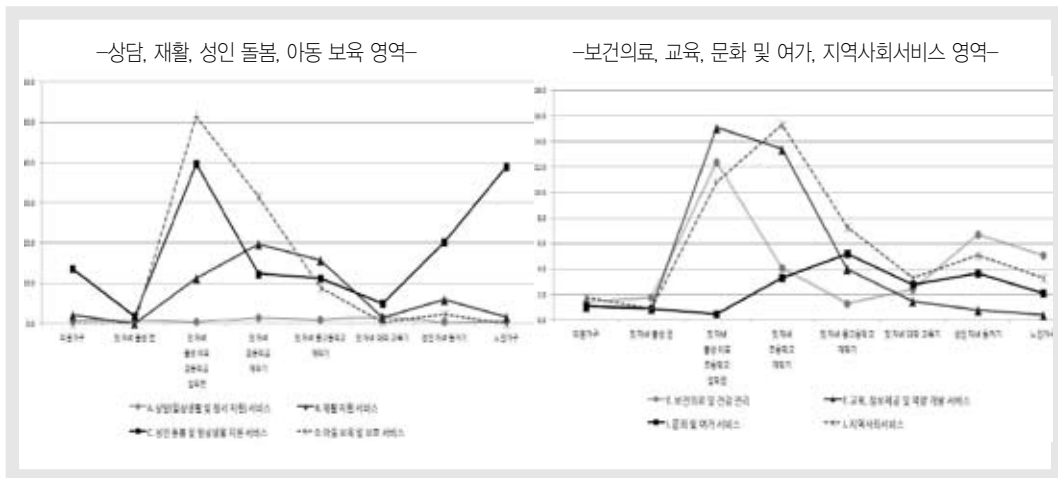
【 사회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욕구 】

○ (이용경험)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응답 비율이 22.4%로 가장 높았다.

- 이어서 '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13.0%)',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7.9%)', '지역사회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6.5%)',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5.2%)',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개발 서비스(4.9%)', '문화 및 여가서비스(2.4%)' 등의 순

○ 사회서비스 이용은 주로 ▲ 첫 자녀 출생이후 초등학교 재학기 시기에 주로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 노인가구원이 포함된 가구에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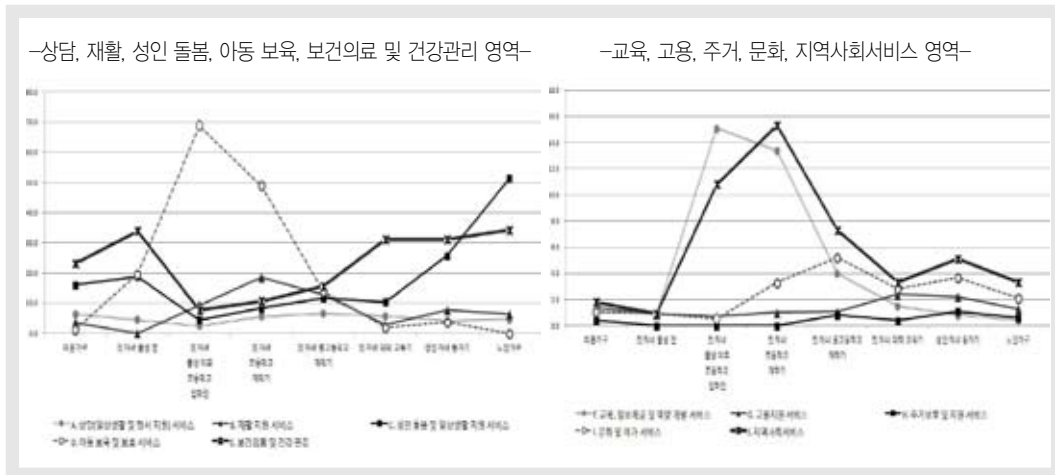
〈 생애주기별 지난 1년간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률 〉



○ (향후 이용의향) 향후 1년 이내의 사회서비스 이용 희망 비율이 가장 높은 서비스 영역은 '문화 및 여가 서비스(29.6%)'부분이었다.

- 그 밖에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23.4%),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21.6%),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19.4%) 등의 분야에서 이용 희망 의사 확인

〈 생애주기별 지난 1년간 사회서비스 이용 희망비율 〉



【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현황 】

- (사업체 창설) 조사대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사업체의 33.2%가 '09년 이후 신설된 반면, '00년 이전에 설립된 경우도 20%를 차지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중 생활시설의 경우, '00년 이전 신설기관(25.8%)이 가장 많았으며, 아동 생활시설의 경우 신규진입이 적은 반면, 노인 생활시설은 신규 기관 설치가 상대적으로 활발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중 이용시설의 경우, '00년대 초반 이후에 주춤하던 신규 사업체 진입 비율이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07년 무렵을 기점으로 신규 설치 비율이 상승 추세
- (조직형태)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조직형태를 살펴보면 전체의 과반수가 개인사업체(50.3%)이며, 그 외 회사이외법인(24.8%), 비법인(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사업내용)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성인 돌봄서비스가 전체의 32.1%로 가장 많고, 교육·정보제공 및 역량개발(21.3%), 직업훈련(14.6%), 아동보육·보호(13.8%), 지역 사회서비스(13.2%) 순이었다.
- (재정 현황)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45.9%가 1~5억 미만, 16.7%는 5천~1억 미만, 13.2%는 5천 미만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1억 미만이 전체의 29.9%를 차지하였다.
 - *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지난 1년간 영업활동(서비스 제공 및 상품판매)과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총수입(매출, 수익 총액)을 2012년 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파악

【 사회서비스 고용 실태 】

○ (총 고용)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월 평균 총 고용인원은 16.7명으로 직접종사자의 비율은 전체 고용의 98% 차지하고 있다.

○ (직접고용현황) 평균 취업인원 16.1명 중 관리직 1.1명, 전문직 및 준전문직(서비스 인력) 12.8명, 사무직 1.3명 순으로 나타났다.

* 직종별 고용인원이 있는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사업체 당 평균인원임.

【 사회서비스 고용창출력 추정 】

〈 본 실태조사 대상 사회서비스사업군의 분야별 노동 관련 계수 추정 결과 〉

(단위: 명/산출액 10억원당, 명/최종수요 10억원당)

구 분	고용계수	취업계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33.128	33.654	40.482	42.851
기타사업서비스	48.173	48.390	55.241	57.526
교육서비스	18.481	18.694	20.932	21.98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2.102	22.241	27.788	30.015
사회단체	22.486	22.540	27.557	31.418
개인서비스	37.261	37.501	47.977	43.991
사회서비스 전체	23.072	23.245	27.425	28.876
관련 산업 평균	13.574	15.497	16.131	19.251

- 주: 1) 고용계수 = 사회서비스 기업군의 연인원 피용자수 / 산출액(10억원당)
 2) 취업계수 = 사회서비스 기업군의 연인원 취업자수 / 산출액(10억원당)
 3) 고용유발계수 = 사회서비스 기업군의 고용계수 × 산업연관표상 고용유발계수/고용계수
 4) 취업유발계수 = 사회서비스 기업군의 취업계수 × 산업연관표상 취업유발계수/취업계수
 5) 사회서비스 전체는 CT가중치를 이용한 가중평균

○ (노동연관효과) 사회서비스업 전체 노동관련 계수 추정 결과, 고용계수는 23.07, 고용유발계수 27.43, 취업계수 23.25, 취업유발계수 28.88로 관련 산업군 평균치 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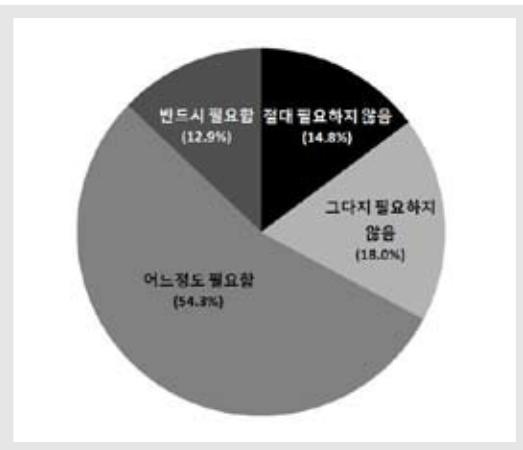
【 사회서비스 정책 관련 의견 】

○ (삶의질 기여) 응답자의 90%가 사회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이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이용자와 비이용자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이용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사회서비스와 삶의 질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인식

- (정책공감도) 11개 사회서비스 유형 모두에 대해 전체의 65% 이상이 국가적 차원의 서비스 제공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사회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공감 응답 비율이 높은 서비스 영역으로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78.8%)', '문화 및 여가 서비스(78.7%)', '교육 및 정보제공(76.3%)', '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 (69.7%)' 등의 순
- (비용부담)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 부담에 대해 응답자의 70% 이상이 국가와 이용자가 '분담'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 (추가 조세부담)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한 현실에서, 응답자의 67.2%가 추가적인 세금 부담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 가구생애주기 후반으로 갈수록 서비스 확충을 위한 세금 부담에 대한 동의('어느 정도 필요함' + '반드시 필요함') 응답 비율이 높았음
- (이용료 차등부담)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이용료를 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료 차등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전체 응답의 91.9%가 대체로 공감하였다.
- (정책인지도) 사회서비스 정책에 관한 전반적 인지도 87.1%에 불구하고, 개별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대략적 정보에 근거하여 피상적인 수준에서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조세부담에 대한 의견 〉



【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정책방안 】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 현황을 분야별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하면서,
- 사회서비스 사업과 사회적 투자수요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 취약계층 대상의 정부지원 서비스라는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홍보

보를 강화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수요를 현실화함으로써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엔질캡슐'에 대한 위험분담제에 따른 급여적용, 안구광학단층촬영검사에 대한 급여적용 등을 의결하고,
-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방안, 하반기 수가체계 개선방안,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하였다.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른 보장성 강화 등 】

□ 건정심은 「'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14.3.5 발표)에 따라,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Optical Coherence Tomography)'에 대해 급여 전환을 결정하고, 뇌수술 및 부비동수술 등에서 실시하는 '무탐침 정위기법'에 대해서는 선별급여 전환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급여 항목명	대상	급여 확대 내용	환자 부담 (선택진료비 제외)
안구광학단층 촬영검사	망막질환, 시신경질환 등	- 급여	10만원 → 1.8만원
무탐침정위기법	뇌종양, 뇌동정맥기형 등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125~205만원 → 28만원
	척수종양, 부비동 수술 등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125~205만원 → 45만원

* 선별급여로 결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실시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주기적(3년)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본인 부담률 조정, 필수급여 전환 등 검토

- 우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Optical Coherence Tomography)'는 눈의 망막질환, 시신경 질환 등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데 유용한 검사로,
 - 급여적용으로 인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10만원에서 1만8천원(외래)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104만명의 안과 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무탐침 정위기법(Navigational Procedure for Surgery)'은 구조가 복잡한 신경계 및 이비인후과 수술에서 합병증 발생과 재수술률을 감소시키는 유용성이 있지만 수술을 보완하는 행위인 점을 감안하여 선별급여로 결정되었으며,

- 본인부담률은 뇌종양 등 뇌수술에서는 50%를 적용하고, 그 외 척수수술과 이비인후과적 수술에서는 80%를 적용할 예정으로, 환자 부담금은 125~205만원에서 각각 28만원, 45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2만여명의 수술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건정심은 신의료기술 등과 관련하여 뇌수막염원인세균 선별검사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로 결정하여 10월부터 적용하고, 호흡기 바이러스 4종 동시검출 검사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하였다.

【 위험분담제 '엑스탠디엔질캡슐(신약)' 급여적용 】

□ 이날 건정심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위험분담제 적용에 따라,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탠디엔질캡슐'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되어, 11월 1일자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 위험분담제: 식약처 허가를 받아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었으나 재정 영향이 불확실한 경우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함.

- 대상: 대체치료법이 없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중 전문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제한적으로 적용

〈 환자부담 완화 사례 〉

- 엑스탠디엔질캡슐(성분명: 엔잘루타마이드,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
 - 대상: 기존 치료제 '도세탁셀' 에 실패한 환자 (예상환자수 연간 280여명)
 - 월 투약비용 약 350만원 → 건강보험 적용시 환자부담 약 17만원 수준으로 경감

【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 】

□ 건정심은 지난 8월에 복지부가 발표한 장기입원에 따른 본인부담 인상방안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을 보고받고 논의하였다.

○ 이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14.3.5 발표)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도입되는 것으로서, 지난 8월 기본 내용이 발표된 이후 현재 사회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 이번에 논의한 안은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 (20%)을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며,

* 한국은 1인당 평균 재원일수 16.1일로 일본(31.2일)에 이어 2위, OECD 평균은 8.4일

-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①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②질병 특성상 입원 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③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보건복지부는 추가적으로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 세부 내용을 조정한 후,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등 공식적 의견수렴 절차도 추진)

○ 한편, 건정심에서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와 함께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 추가 검토하기로 하였다.

【 하반기 수가개편 방안 】

□ 건정심은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요인이 있거나, 그간 수가개편이 정체되어 있는 등 건강보험 수가 (가격) 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수가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논의하였다.

○ 주요 개선과제로는 ① 요양병원 수가개선 ② 혈액투석수가 차등제 ③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선 ④ 간호등급제 산정기준 개선 ⑤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개선 등이다.

○ 이러한 수가개편은 하반기에 각종 협의체, 연구 등을 통해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수가개편 필요성 〉

- (요양병원) '08년 일당정액제 도입 이후 수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간 요양병원 질 변화, 새로운 수요, 낭비적 요소 등 미흡한 측면 존재
- (혈액투석) 의료기관별로 의사 1인당 치료환자수의 격차가 크고, 질 수준에 있어 격차도 크게 발생
- (식대수가) 급여화 이후 8년간 수가가 변하지 않아 수가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고, 가산체계가 복잡하여 편법이 야기된다는 지적
- (간호등급제 산정기준) 육아·학업 등으로 전일근무가 어려운 간호사의 경우 직장을 이탈하게 되고, 한번 퇴직하면 복직도 어려운 문제 발생
-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13년 분만취약지 가산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취약지 산부인과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개선 검토

【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 】

□ 건강보험은 현재 28개 병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예산지원 방식)을 '15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논의하였다.

- * 급성기 병원에서 보호자나 사적고용 간병인 대신 간호인력이 간병을 포함한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 '15년부터 '17년까지는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여 병동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은 현재보다 약 2배 이상의 간호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 * 종합병원이 50병상을 포괄간호병동으로 운영시, 현재 평균 15명의 간호사가 근무 중이나, 평균 32명(간호사 9명, 간호조무사 8명 추가)으로 확대
- 세부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환자특성, 간호인력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병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형으로 설계하였고, 이에 따라 포괄간호 병동입원료도 차등 산정하였다.

〈 종별 포괄간호병동 입원료 수준(안) 〉

(단위: 원)

	현행입원료	포괄간호병동입원료	현행 입원료 대비증가분
종합병원	46,010 (간호3등급기준)	61,010~79,270	15,000~33,260
표준배치(1:10 + 1:30)		69,940	23,930
병원	40,310 (간호3등급기준)	53,260~65,700	12,960~25,390
표준배치(1:12 + 1:30)		59,950	19,640

- 포괄간호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별도의 자격 기준* 없이, 포괄간호병동에 입원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 * 정신과 환자 및 주치의가 포괄간호병동 입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 가능
 - 종합병원 기준 입원료 본인부담은 일당 약 1만 2천원~1만 6천원으로 현행 부담보다 약 3,000원~6,600원이 증가된다.
- 인력배치 기준과 포괄간호병동입원료 수기는 지난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투입되는 간호인력과 소요되는 원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 앞으로 병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며, 추후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적정성을 평가,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과 기준의 근거*를 개별 고시의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개편하는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하였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5월 개정·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2616호, 2014. 11. 21. 시행 예정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

① 기존 쉼련과 달리 별도로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담배의 종류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은 담배로 분류하였다.

- 각 담배의 특성에 따라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를 쉼련과 별도로 규정토록 하였다.

-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쉼련의 담뱃갑포장지 대신 담배 제품의 포장지 또는 용기에 표시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쉼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 동법 시행령 32조 1항 위탁할 수 있는 사항에 담배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업무 추가 및 동법 시행령 32조 2항 위탁가능 기관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추가

-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FAX : 044-202-3938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연금 추후납부 확대 및 장애·유족연금 기준 개선

〈 개정안 주요내용 〉

① 추납 확대

- ◇ 전업주부가 된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후 전업주부 기간만큼 추후에 보험료 납부 가능,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 기회 확대

② 장애·유족연금의 보장 강화

- ◇ 과거 성실히 납부했으나 경력단절로 적용제외자가 된 전업주부도 앞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장애·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

□ 보건복지부는 ▲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허용, ▲ 장애·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재입법예고안의 핵심은 그간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전업주부'에게 추후납부 및 장애·유족연금 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

【 추진 배경 】

- 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노후소득을 보다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 취약계층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추진 방향이다.
 - 정부는 지난 9월 실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실업 크레딧'을 내년부터 도입하고
 -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을 내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현행 135만원 미만)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 현행 제도 】

-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18세부터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면서 가입자와 적용제외자로 구분하고 있다.

구분		대상자	인원			
가입 대상 (18~60세)	당연 가입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	1,213만명	총계 1,084만명	
		지역	사업장가입자 아닌 자(적용제외자 제외)	388만명		
		납부예외	실직, 휴직, 병역, 재학, 교정, 감호, 1년미만 행방불명, 재해발생으로 보험료 납부 곤란	464만명		
		임의가입	적용제외자 중 가입 희망자	19만명		
	임의 가입	적용제외	국민·지역연금 가입자· 수급권자인 배우자를 둔 무소득자	656만명		총계 1,084만명
			지역연금 수급권자(연계연금 미신청자)	10만명		
			재학, 병역 등 18~27세 무소득자 (납부이력자 제외)	333만명		
			기초수급자(56만명), 1년이상 행방불명자(29만명)	85만명		
가입대상 제외		타 공적연금 가입자	150만명	161만명		
		국민연금수급자(특수직종, 조기노령)	11만명			

- 가입자가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연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

현료를 내지 않을 수 있지만(납부예외)

-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라면 당연가입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적용제외)

- 이에 따라, 전업주부가 된 경력단절 여성은 임의가입하지 않는 한, 적용제외자가 된다.

* 적용제외자 중 국민·직역연금 가입자·수급권자인 배우자를 둔 무소득자(무소득배우자)는 656만명, 이 중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자는 446만명

○ 적용제외자는 납부예외자와 달리 추후납부(추납) 및 장애·유족 연금이 보장되지 않아 경력단절 전업주부는 연금 수급권 확보가 어려웠다.

- 납부예외기간은 향후에 여력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는 추납이 가능하지만 적용제외기간은 추납할 수 없고

- 적용제외기간에 발생한 장애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적용제외기간에 사망한 경우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 개정안 내용 】

□ 앞으로는 추납 및 장애·유족연금 수급기준을 개선하여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재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업주부로서 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한 추납 허용

※ 3년 가입하고 결혼한 뒤 58세가 된 주부 A씨, 지금은 임의가입 2년 하더라도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어 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안 시행시 보험료 530만원(99만원 소득기준, 5년치 보험료)을 추후납부하면 연금수급 가능(20년간 약 4천만원)

○ (추납기간) 지금까지는 납부예외기간만 추납 할 수 있었지만

- 앞으로는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으나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제외된기간*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다.

* 추납가능한 적용제외기간: △무소득배우자 기간, △기초수급자·1년 이상 행방불명으로 적용제외된 기간

- 이에 따라,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과거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

○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과거시점이 아닌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의 소득과 보험료율(9%) 및 소득대체율(14, 47%)을 적용한다.

*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은 근로·사업·농·임·어업소득을 말함

- 경력단절 전업주부처럼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중위소득('14, 99만원) 이상 A 값('14, 198만원) 이하로 신고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예를 들어,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15. 3월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중위소득 99만원의 9%인 89천원을 월 보험료로 납부하고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에는 '15년 소득대체율인 46.5%를 적용한 급여를 받게 된다.

* 소득대체율: 본인의 소득 대비 향후에 연금 급여로 받게되는 금액의 비율('14년 47%, 매년 0.5%p씩 인하하여 '28년 40% 유지)

○ (분할납부) 한 번에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분할납부는 현행 최대 24개월에서 60개월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월 단위 이하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는 없음

- 이에 따라, 추납하려는 기간이 60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매 월 추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신청방법) 추납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기대효과) 이에 따라 노령연금을 확보하기 쉽고 예상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추납을 통한 노령연금 예상수령액 〉

구분		종전 가입기간	추납 기간	보험료 총액		연금수령액(20년)	
				종전	추납		
사례①	소득	100만원	3년	7년	324만원	756만원	4,200만원
		200만원	3년	7년	648만원	1,512만원	5,609만원
사례②	소득	100만원	5년	5년	540만원	540만원	4,249만원
		200만원	5년	5년	1,080만원	1,080만원	5,647만원

* A값: 198만원, 임금/물가상승률/이자율은 고려하지 않음

종전가입기간: '09~'13년도, 추납년도 '15년 가정

② 장애연금 지급기준 대폭 개선

※ 장기간(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결혼 이후 지금은 더 이상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던 중 질병이 발생한 전업주부 B씨(현행기준)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 아니므로 장애연금 지급 불가(개정안) 가입 중이 아닌 적용제외기간 중 발생했어도 과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장애연금 수급 가능

○ 과거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해 온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의 범위를 확대한다.

- 장애연금 보장 확대로 국민연금의 사회연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성실납부자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보험으로서의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취지이다.

○ 현행 장애연금 기준은 장애연금을 받기 어렵고, 가입 대상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그간 계속 제기되었다.

• 첫째,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만을 장애연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어 종전에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더라도 적용제외기간 중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의 혜택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 둘째, 보험료 낸 기간 및 내지 않은 기간(보험료 고지기간)의 2/3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 셋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납부예외기간은 제외되어 장기간 납부예외자는 1개월만 보험료를 납부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어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 새롭게 마련한 장애연금 기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라면 적용제외기간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장애연금 기준 개정안 구체적 내용〉

① (장애발생 요건) 적용제외 기간 중 발생한 장애라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 18세부터 60세 미만까지 기간 중 발생한 장애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국외에 이주하거나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는 등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 발생한 장애는 제외한다.

② (성실납부 요건) (가), (나), (다)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납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 (크레딧 산입기간은 보험료 낸 기간으로 간주) $\geq \frac{1}{3}$ 가입대상 기간 (18세부터 질병, 부상의 초진일까지)

*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납부예외·적용제외기간, 군 복무 기간 및 직역연금 가입 등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질병·부상의 초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 다만, 27세 이전에 납부예외·적용제외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은 가입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 예를 들어, 27세 전까지 취업준비생(적용제외), 27세 입사한 후 33세에 질병이 발생한 사람이라면, 가입대상기간은 6년이 된다.

연령	가입대상기간 여부
18~27세 미만: 학업에 따른 무소득자	8년 간 (적용제외) / 가입대상기간 아님
27~33세 미만: 근로자	6년 간 (사업장가입자) / 가입대상기간

< 질병·부상 발생 연령별 가입대상기간 >

연령	가입대상기간	1/3 기간	연령	가입대상기간	1/3 기간
18세	-	1개월	39세	12년	4년
...	45세	18년	6년
28세	12개월	4개월	51세	24년	8년
30세	36개월	12개월	57세	30년	10년

- 또한, 보다 많은 사람이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장애연금에서는 고려하지 않던 '군복무·출산 크레딧'에 따른 추가 산입기간을 '보험료를 낸 기간'에 포함한다.

* 군 복무 크레딧: 6개월 이상 군 복무한 경우 가입기간 6개월 추가 산입출산 크레딧: 둘째아 출산 시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 추가 산입(최장 50개월)

(나) 최근 2년(초진일 발생 전 2년부터 초진일까지) 간 1년 이상 납부

- 초진일 발생 전 2년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최근 2년 간 1년 납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10년 납부 요건

- 질병·부상의 초진일 시점에는 (가), (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10년간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10년 납부한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 개선되는 장애연금 지급기준은 법 시행일 이후 질병·부상의 초진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다만,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 후 2년 간은 종전 규정도 함께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 장애연금 기준 개선으로, 장애연금 수급가능 대상자 규모는 현행보다 약 390만명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잠재적 수급자 규모: 15,640천명 → 19,559천명(국민연금연구원 시뮬레이션)
 - 이 중 장애 발생 비율을 감안할 때, 실제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보다 연간 약 2,150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③ 유족연금 지급 기준 개선

- 장애연금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족연금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 현재는 적용제외자가 사망하면 사망자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만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했으나
 -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 가입대상기간 중 1/3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 사망하기 전 최근 2년 간 1년 이상 납부(3년 이상 장기체납 제외)했다면, 사망 시에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개정안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장애연금과 마찬가지로 시행 후 2년 간은 종전 규정도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④ 급여 지급 수준 상향 등 추진

- 급여 수준을 향상시키고 급여 수급의 선택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개정된다.
 - 국민연금액 물가반영 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물가반영시기가 3개월 앞당겨져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연간 22천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인상시기와 일치
 - ** 국민연금 평균액 수급자의 경우 연 22천원 증액 효과(14년 물가인상률 2.3% 가정)
 -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시,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그 비율을 30%까지 상향시킨다.
 - 중복지급률을 10%p 상향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은 월 평균 약 2.6만원 인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혼으로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다시 그 배우자와 재혼하면 분할연금을 포기하고 배우자 노령연금을 분할 전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있게 된다.
- 이 밖에도 수급권자 사망을 유족이 1개월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면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다.

【 의의 및 향후계획 】

- 보건복지부 조남권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그간 연금 혜택에서 소외되어 온 전업주부 등이 연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장애·유족연금 기준이 개선되어 급여 혜택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 “재입법예고가 끝나면 국민연금 가입 취약계층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 종합대책」을 금년 중 발표하여 보다 든든한 국민연금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빠르면 금년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 * 의견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팩스: 044-202-3976)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 보건복지부는 10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현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제한되어 국가유공자와 등록 장애인 간에 복지서비스 불균형으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금번 시행령 개정(내년 4월 시행)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면 122천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3천명 내외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절차를 간소화하여 장애인 등록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 신청 및 장애등급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9천여명의 상이등급자는 신체검 사표 활용으로 등록이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 이로 인해 그간 국가유공자와 등록 장애인 간에 복지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의 불만 족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복지체감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 대된다.
- 다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 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복 지서비스는 제한된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밖에도 금번 개정 시행령에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요건을 규정하였다.

■ ■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방지 근본대책 마련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 인권상황에 대한 점검 및 사례 분석을 실시하고,
 - 이를 토대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시설입 소 장애인의 심각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적극 나선다.
- 인권실태조사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02개소(입소자 및 종사자, 시설 환경 등)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 44개 시설에서 주요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되어, 8개 시설에 대하여는 수사 의 퇴하였으며,
 -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3개 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 또한,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포함하여 안전 및 편의시설, 청결상태 등 시설운영 및 환경 부분을 종합 적으로 점검하여
 - 1,40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으며, 854건(61.0%)은 시정 조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지적사

향도 조치 진행 중에 있다.

- 인권실태조사 사례를 토대로 수립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었으며,
 - 민일,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기발견 및 신속한 구조체계” 마련 및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처벌” 하는 등 입소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특히, 현행 체계에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시범사업 형태를 통해서라도 우선 추진하고,
 - 법령 개정 및 재정 수반 과제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등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도움이 되는 대책이 되도록 하였다.

【 사전 예방 】

- 우선,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과반수를 외부 인력풀(변호사, 공공후견인후보자 등)로 전면 재구성 하는 등 외부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 지자체에서는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과반수를 복지부에서 제공한 변호사, 공공후견인후보자 인력 풀과 자체모집한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지정하고,
 - 시설 자체에서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은 입소자 및 보호자, 종사자 등 3명 이내로 제한한다.
-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 법령을 개정하여 성범죄 뿐만 아니라 학대 등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시설별 연 1회 이상 전문강사가 직접 시설에 방문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 특히, 복지부 주관으로 연 2회(상·하반기) 전국 시설장 및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설 관리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 *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 병행 실시 예정
- 금년 중으로 인권침해 의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심시설로 나타난 시설에 대하여 “지자체-경찰청”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조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 특별점검 후에는 경찰공무원 등을 통한 “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 입소자의 위해(危害)행위 등에 대한 조치 매뉴얼도 개발한다.

○ 입소자의 자해 및 가해 등 위해행위 발생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 위해행위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 신체적 개입의 원칙·절차·방법 등을 명시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우선,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 또한, 1실당 거주인원 축소(8→4인) 및 1인당 돌봄 서비스 인력 확대 등 입소자의 거주 생활환경 개선 및 돌봄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인권보호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 조기 발견 】

□ 인권실태조사 전문조사원을 양성하고, 시설에 대한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확립한다.

○ 금년도 인권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조사원의 전문성 및 자질 논란, 인력부족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실태조사 전문 조사원(180명 이상)을 양성할 예정이다.

○ 실태조사 전문조사원 인력풀을 활용하여 매년 특정기간 지정없이, 약 200개소*의 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불시에 실시한다.

* '14년도 인권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인권침해 의심시설 등 우선 조사

□ 시설 내 학대 등 인권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내부신고 활성화도 적극 도모할 예정이다.

□ 시설 입소 장애인의 대부분이 지적장애인으로 그림을 통해 알기 쉽게 자신의 권리 확인 및 인권침해 상황 발생시 신고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수첩도 제작하여 배포한다.

□ 「(가칭)장애인시설 인권조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인권침해 의심사례에 대한 민·관 합동 협업조사도 강화한다.

○ 시·도별로 “지자체-경찰청-변호사-인권전문가” 등으로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전문기관 등 법적 전담기관이 설치·운영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담팀을 운영한다.

【 종합 보호 】

□ 피해자 종합 보호체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애인 보호전문기관 및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를 추진한다.

○ 우선,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전문기관 설치를 통해 24시간 상담전화,

피해현장 출동 및 현장조사, 구조 활동 등을 수행한다.

- 또한, 피해자 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지원 연계 등 체계적인 사후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특히, 법령 개정 이전에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중 일부를 피해자 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로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심리치료사, 간호인력 등을 추가 배치 예정

【 처벌 강화 】

□ 법령 등을 개정하여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 시설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 우선,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확대 적용하고, 처벌 규정도 아동복지법*에 준하도록 신설한다.

*아동복지법 제7조(벌칙): 매매, 음란행위(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체·성적·정서적학대, 유기·방임 등(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인권침해 발생시설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되고, 특히, 행정처분 외에 최대 1년간 운영비 감액(기본급 10% 삭감) 지원 등 재정적 불이익 조치로 종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함께 물을 예정이다.

*다만, 인권침해 사건 발생 즉시 내부고발 등에 의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가해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등 조치

- 또한, 취업제한 대상을 장애인 학대관련 범죄 경력자로 확대하여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이 불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